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중인 자와 출국금지자의 공관장 임명 배제〉
■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1호)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3
2. 주요내용 검토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형의원 등 15인
2. 제안일자 : 2024년 6월 18일
3.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김준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특임공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될 수 없다.</u> <u>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u>

	2.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
--	---

2. 주요내용 검토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¹⁾.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특수한 공무원으로서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채용시험, 자격심사, 적격심사, 정년 등의 규정은 특임공관장에게 적용되지 않음. 다만, 특임공관장을

1) 「외무공무원법」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함한 모든 공관장의 자격심사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²⁾,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4항³⁾에 따라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일반공관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추진실적을 제외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평가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4년 7월 기준, 재외공관장 159명(전체 공관 167개)중 특임공관장은 32명으로 전체 재외공관장의 약 20%임.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한 사안과 관련하여 특임공관장 임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중대한 사건으로 수사 중인 인물을 중요한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다른 공직자와 달리 공관장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와 출입국관리법에

2) 근거규정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및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공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 하락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의 임명을 법으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출국금지 사유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출국금지만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외교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4)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인사권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조사·수사, 출국금지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 대통령 인사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고, 출국금지자 등의 공관장 취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70